



신축건물 준공시 상하수도 면허제출에 관한 건의

HOME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SITEMAP

 **전주시**
JEONJU CITY

시소개

자료실

인터넷민원실

분야별시정

생활정보

참여마당

문화·관광

전주시, 시민은 최고의 고객,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고

신청인 : 장중항 신청날짜 : 2007년 2월17일

전국보일러 보일러 설비협회 전북지부 전주 완주 분회장
입니다

신축건물물 위생배관설비공사를 할 경우 정화조 이전은
대체로 난방시공 면허업자가 시공하고 정화조 이후는 상
하수도 면허업자가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난방시공 면허업자가 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상하
수도 면허업자의 명의로만 빌려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보통 정화조 이후의 공사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 이정하는 경미한 공사로서 상하수도 면허업
자들은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경미한 공사는 난방
시공 업자의 명의로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전주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건
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리일 : 2007년 2월20일

장중항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건축물의 위생설비공사를 할 경우 정화조 이후의 배수설
비 시공을 난방시공자격을 가진 업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시공은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 산
업기본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
야 하며, 옥내배수설비공사 또는 배수관·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

수설비의 유지·관리공사와 같은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그러지 않을 수 있음(하수도법 제 27조, 전주시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 5조)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
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규
정으로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5조의 경미한 공사와 구
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청 하수관리과(유회조 ☎
281-523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